

「환승편의성 검토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정안에 대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일

국토교통부 장관

「환승편의성 검토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11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9에 따라 환승편의성 검토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승편의성 검토 원칙 등(안 제4조 등)

환승편의성 검토 원칙과 환승편의성 검토서 작성 요령을 마련하여 승강장 배치, 환승 동선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등 이용자 관점에서의 환승 편의 향상을 도모함

나. 환승편의성 검토서 제출 등(안 제15조 등)

환승편의성 검토에 대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시기, 전문기관 기술 검토, 심의 요령 등을 규정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다. 중대한 변경 등(안 제19조 등)

도시철도·철도 기본계획의 중대한 변경으로 인해 환승편의성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세부 검토 및 심의 요령을 규정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광역환승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 벅크빌딩 7층(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우편번호 30121)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환승과 (전화 044-201-5136, 5135, 팩스 044-868-8375)